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7일 15시 17분



목차

목차	2
1 회용품사용규제안내	3
1 회용품이란?	3
규제 대상 사업자	3
규제대상 사업자의 준수할 사항은?	3
준수사항을 안 지키는 경우는?	4
1 회용품 사용규제 협조사항	4
업종별 준수사항	4
식품접객업/집단급식소	4
식품접객업/집단급식소 예외사항	4
목욕장업	5
식품제조·가공업/즉석판매 제조·가공업	5
식품제조·가공업/즉석판매 제조·가공업 예외사항	5
대규모점포 및 도·소매업	5
대규모점포 및 도·소매업 예외사항	5
대규모점포 및 도·소매업 제외사항	6
기타	6
기타	6
1 회용품사용규제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	6

환경개선부담금제도	환경영향평가	정화조내부청소실시안내	1회용품사용규제안내
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

1회용품이란?

-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용품은 무수히 많다. 1회용 주사기, 기저귀, 카메라, 물수건 등 헤아릴 수 없으나 이와 같이 1회용품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.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.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(별표1)에는
 - ▷ 1회용컵·접시·용기(종이·금속박·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.)
 - ▷ 1회용 나무젓가락
 - ▷ 이쑤시개(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.)
 - ▷ 1회용 수저·포크·ナイ프
 - ▷ 1회용 광고선전물(신문·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,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과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것에 한한다.)
 - ▷ 1회용 면도기·칫솔
 - ▷ 1회용 치약·삼푸·린스
 - ▷ 1회용 봉투·쇼핑백(환경부장관이 재질, 규격, 용도,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)
 - ▷ 1회용 응원용품(응원객,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,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.)
 - ▷ 1회용 비닐식탁보(환경부 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인 경우를 제외한다.)

규제 대상 사업자

- 법에서 규제대상 1회용품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.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.
- 즉,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·목욕장·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, 동 법 시행령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받도록 하였다.
 - ▷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
 - ▷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
 - ▷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·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
 - ▷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
 - ▷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 - ▷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"표준산업분류"라한다)에 따른 도·소매업(제5호에 따른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,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)
 - ▷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증권 및 선물중개업,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, 광고대행업,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, 영화산업, 공연산업
 - ▷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, 체육관, 종합체육시설

규제대상 사업자의 준수할 사항은?

-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.
- 이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체용기사용을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동시에,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할 1회용품에 대하여는 유상판매제를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려는 정책이다.

준수사항을 안 지키는 경우는?

-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.
- 이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위반이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으며 위반 시 이처럼 많은 과태료를 부과된다.

1회용품 사용규제 협조사항

- 마트나 시장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기
 - › 1회용 봉투 사용도 줄이고, 돈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
- 야외에 나갈 때에는 찬함 등 다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가기
 - › 조금의 번거로움은 당신의 사랑과 정성을 더욱 돋보이도록 만들어 드립니다.
-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· 칫솔 등 세면도구 챙겨가기
-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기
-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 용기를 사용하거나, 종이· 펄프 등 천연재료의 용기 사용하기
-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 정착에 동참하기

업종별 준수사항

식품접객업/집단급식소

준수사항	적용대상 1회용품	비고
사용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회용 컵· 접시· 용기 · 1회용 나무젓가락, 이쑤시개 · 1회용 수저· 포크· 나이프 · 1회용 비닐식탁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장 내· 외 자판기를 설치하여 셀프 및 사업주가 금전을 제공하여 커피를 제공 할 수 있음 · 전문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
제작·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	1회용 광고선전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합성수지로 도포(코팅· 첩합(라미네이션)된 경우 ※ 100% 종이로 된 광고지 사용 가능 · 광고용 스티커, 명함 등 업소 비치 및 배포 안됨

식품접객업/집단급식소 예외사항

- 혼례· 회갑연·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
- 음식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는 경
 - › 외부 반출용 도시락용기는 종이, 펄프 및 갈대 등 천연재료의 용기를 사용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분해성 재질 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야 함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- › 종이, 펄프 및 갈대 등 천연 재질의 용기라 하더라도 용기 양면이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되어서는 안됨
- › 물이나 국물만을 담는 경우에 한하여 합성수지나 양면 코팅된 종이 등의 용기 사용이 가능함
- 이썬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
- ※ 제과점등은 식품접객업이면서 도·소매업에 해당되므로 도·소매업 준수사항이 추가 됨

목욕장업

준수사항	적용대상 1회용품	비고
무상제공 금지	1회용 칫솔·치약, 1회용 면도기, 1회용 샴푸·린스	카운터 등에 "유상제공"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및 목욕료와 별도로 계산 후 지급

식품제조·가공업/즉석판매 제조·가공업

구분	준수사항	적용대상 1회용품	비고
백화점·대형점·쇼핑센터·도매센터·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내 영업장	사용억제(금지)	1회용합성수지 용기	백화점·대형점 등 이외의 지역에 입지한 업소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 금지
상기 외 영업장		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	물이나 국물만을 담는 경우 사용 가능

식품제조·가공업/즉석판매 제조·가공업 예외사항

-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
- › 종이, 펄프 및 갈대 등 천연재질의 용기인 경우. 단, 양면을 합성수지로 코팅된 경우는 사용금지
-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분해성 재질 기준에 적합한 용기

대규모점포 및 도·소매업

준수사항	적용대상 1회용품	비고
무상제공 금지	1회용 봉투·쇼핑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봉투 판매 후 계산서에 별도로 봉투가격 기재 (물건값에 봉투값 포함 및 허위기재시 불인정) ▪ 고객이 사용한 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판매 금액으로 환불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여야 함
제작·배포억제등 사용억제	1회용 광고선전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합성수지로 도포(코팅)·첨합(라미네이션)된 경우 › ※100% 종이로 된 광고지 사용 가능 ▪ 광고용 스티커, 명함 등 업소 비치 및 배포 안됨

대규모점포 및 도·소매업 예외사항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- 생선·정육·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
- 농·축·수산물을 담은 롤 봉투, 단, 수분, 흙 등이 묻어 있어 다른 상품의 훼손을 방지하기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

♻️ 대규모점포 및 도·소매업 제외사항

- A4규격(210mm*297mm) 또는 1ℓ(1,000㎤)이하의 종이 봉투·쇼핑백
- B5규격(182mm*257mm) 또는 0.5ℓ(500㎤)이하의 비닐 봉투·쇼핑백
- 망사·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·쇼핑백
- 이불,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
 - 위 대상은 1회용품 사용규제(무상제공금지) 대상에서 제외됨(2005.3.10)

♻️ 기타

업종	준수사항	적용대상 1회용품	비고
테이크아웃점(패스트푸드점, 커피전문점)	사용억제(금지)	1회용 컵	
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증권 및 선물중개업,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, 광고대행업,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, 영화산업, 공연산업	제작·배포억제 등 사용억제	1회용 광고선전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합성수지로 도포(코팅)·첩합(라미네이션)된 경우 ※100% 종이로 된 광고지 사용 가능 · 광고용 스티커, 명함 등 업소 비치 배포 안됨
운동장, 체육관, 종합체육시설	무상제공금지	1회용 응원용품	

♻️ 기타

- 테이크아웃점(매장면적별)
 - › 150㎡ 미만 :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100분의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
 - › 150㎡ 이상 :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

1회용품사용규제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

무심코 사용하는 1회용품은 자원을 낭비하고 소중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합니다.

대상업소	준수사항
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	1회용(비닐식탁보·컵·접시·용기·수저·포크·나이프·나무이쑤시개)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.(계산대에 비치된 나무이쑤시개도 전분이쑤시개로 사용권장)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목욕장	1회용(면도기·빗솔·지약·샴푸·린스)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비치할 수 없습니다.
대규모점포 (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) 도·소매업소	1회용 봉투·쇼핑백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 (단 A4규격 또는1ℓ이하의 종이봉투·쇼핑백, B5규격 또는 0.5ℓ이하의 비닐봉투·쇼핑백, 망사,박스 및 자루형태로 제작된 봉투·쇼핑백, 이불·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는 사용가능)
식품제조·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	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및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운동장, 체육관 종합체육시설	1회용(막대풍선·방석)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모든사업장	합성수지로 도포·첩합(코팅)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·배포할 수 없습니다.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